

# 건축물을 철거·해체하기 **‘전’**에는 “**석면조사**” 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!

## 의무주체

- ▶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(철거권한과 의도가 있는 자)

## 석면조사방법 [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]

- ▶ 건축물 연면적의 합과 철거·해체하려는 면적의 합이 아래의 **대상 규모**인 경우에는 지정 **석면조사기관**에 **의뢰**하여 **석면조사**를 하여야 합니다.
- ▶ **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**에는 의무주체가 스스로 (**일반**)**석면조사**를 할 수 있습니다.

방법	기관석면조사	일반석면조사
방법	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	육안, 설계도서,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(석면함유여부, 위치, 면적)실시
대상 규모	건축물 연면적 합 50m <sup>2</sup> (주택: 200m <sup>2</sup> )이상 이면서 철거·해체면적 합 50m <sup>2</sup> (주택: 200m <sup>2</sup> )이상	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
위반시	5천만원 이하 과태료	300만원 이하 과태료

※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[홈페이지\(www.moel.go.kr\)](http://www.moel.go.kr) <알림마당 → 알려드립니다 >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## 🔍 석면해체·제거 작업방법

- ▶ 기관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**50m<sup>2</sup> 이상**인 경우에는 **전문 등록업자에게 의뢰**하여 **해체·제거작업**을 하여야 합니다.
- ▶ 전문 등록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할 대상 이외에는 의무주체가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】

방 법	<b>석면해체·제거업자 실시</b> 등록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게 의뢰 (업자는 고용부에 작업 신고의무)	<b>직접실시 가능</b> (신고의무 없음)
대 상 규 모	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(석면이 1%초과)이 50m <sup>2</sup> 이상	석면자재면적 1~49m <sup>2</sup>
위반시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	-

- ▶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·해체하는 모든 작업은 “**석면해체·제거의 작업기준**”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 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】

※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- ※ 석면해체·제거업자 등록 현황은 고용노동부 [홈페이지\(www.moel.go.kr\)](http://www.moel.go.kr) <알림마당 → 알려드립니다>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